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84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태수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서상열,
심미경, 유만희,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종태, 이희원,
임춘대, 채수지, 최민규,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최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따라, '25. 9월 서울특별시 의회는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음
- 그럼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임차인 보호) ① 시장은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임차인 보호) ①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2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4. (생 략) ②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6조의2(임차인 보호) 제1항 제4호	△	[추계 곤란] 임차인의 보증금 화수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 범위·방법·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객관적 추정이 곤란

- 안심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또는 협의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홍보비 등)으로 지원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범위, 내용 등의 결정을 위해 기관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